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9조(경보용 설비 등) · 400㎡ 또는 상시 50명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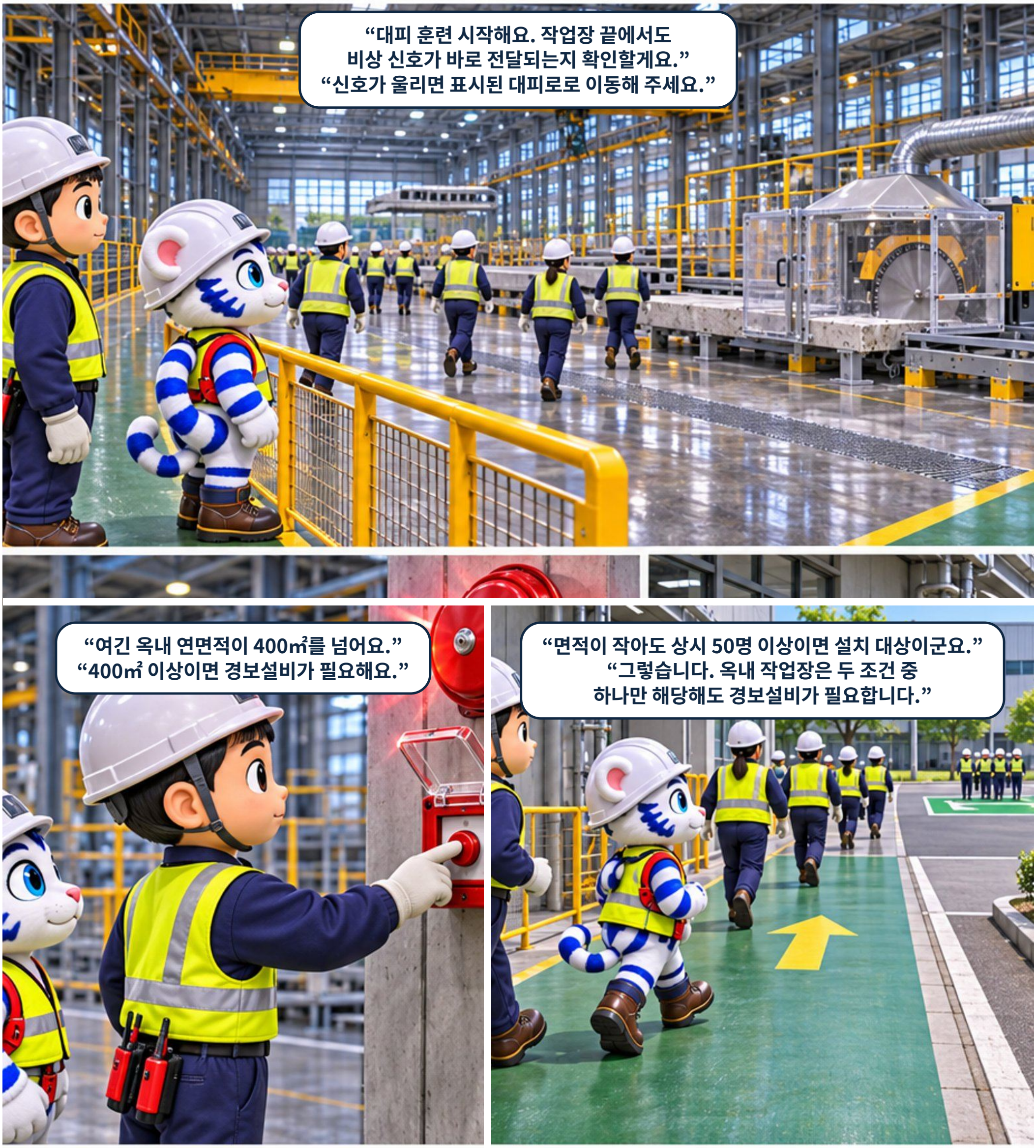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9조(경보용 설비 등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조문 대조 2026. 10. 28.